

##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 카드뉴스

###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

### Q&A



국민권익위원회

Q1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

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 
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 
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?

YES

예, 있습니다.

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 
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 
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Q2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

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 
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NO

Q3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

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 
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 
할 수 있나요?

NO

안됩니다.

다만,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 
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·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경위,  
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 
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 
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 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 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#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&A 카드뉴스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4



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 
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 
해도 되나요?

YES

예, 가능합니다.



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 
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(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)  
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 
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 
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.

Q5



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 
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, 교감 및  
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NO

안됩니다.

학생들의 성적, 평가,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 
교장,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 
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이  
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.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6



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원  
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?

YES

예, 가능합니다.

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 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 
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&A

Q7



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 
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?

NO

아닙니다.

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 
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,  
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자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 
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 
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